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0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9월 14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 쟁취!

***9/14(월) ~ 21(월) 중 2시간 파업 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전개한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50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런 노동자들이 350만명이나 된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2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현재 노조법은 근로계약서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조를 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의

사용자와 진짜 사장이 다른 간접고용의 경우, 진짜 사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2조 개정]

3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1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사용자는 벌금 몇푼만 내면 그만이다.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 최고 책임자, 실소유주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양판지 노조파괴 범죄 신속하게 수사하라!

대양판지지회가 회사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회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을 압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조직한다. 전체 지회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탄원서 작성으로 연대 정신을 보여줄 때다.

대양판지는 올해 3월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자 어용노조를 2개나 만들어서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노동부, 검찰의 수사 결과 회사가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사측은 어용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대양판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날뛰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절실하다.